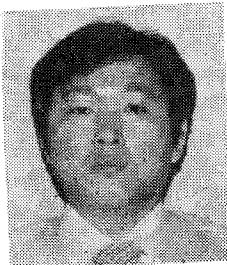


中共進出과 特許 制度(完)



鄭泰連
(辨理士)

〈前號에서 계속〉

3. 審査·審判實務

特許出願에 對한 審査 및 特許權의 效力에 관한 紛爭이 審査官 또는 審判官에 의해 處理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共通된다.

우리 나라의 特許法의 審査官 및 審判官에 관한 規定은 다음과 같다.

特許法 第80條(審査主義과 審査官)

① 特許廳長은 審査官으로 하여금 特許出願 및 特許異議申請을 審査하게 한다.

② 審査官의 資格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特許法 第101條(審判官 및 抗告審判官)

① 特許廳長은 審判請求가 있을 때에는 審判官으로 하여금 審判하게 한다.

② 審判官 및 抗告審判官의 資格은 大統領令으로 定

한다.

特許法施行令 第11條(審查官·審判官·抗告審判官의 資格)

① 審査官이 될 수 있는 者는 特許廳職制에서 定하는 審査官의 職級에 해당하는 公務員으로서 國際特許研修院에서 所定의 審査官研修課程을 修了한 者로 한다.

② 審判官이 될 수 있는 者는 特許廳職制에서 定하는 審判官의 職級에 해당하는 公務員中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公務員으로서 國際特許研修院에서 所定의 審判官研修課程을 修了한 者로 한다.

▲ 特許廳에서 2年以上 審査官으로 從事한 者.

▲ 產業行政 또는 科學技術에 관한 事務(研究를 包含한다. 이하 “產業行政 등의 事務”라 한다)에 8年以上 從事한 者로서 그중 3年以上 特許廳에서 審査 또는 審判事務에 從事한 者

③ 抗告審判官이 될 수 있는 者는 特許廳職制에서 定하는 抗告審判官의 職級에 해당하는 公務員中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

▲ 特許廳에서 2년以上 審判官으로 從事한 者

▲ 產業行政等의 事務에 12年以上 從事한 者로서 그중 3年以上 特許廳에서 審査 또는 審判業務에 從事한 者 중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官研修課程을 修了한 者

위의 規定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特許法은 審査官 및 審判官이 特許出願의 審査 및 特許權의 效力에 관한 紛爭을 處理하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다.

그리면 中共의 特許法은 어떠한지 中共特許法의 關係規定을 紹介한다.

第34條

特許局은 特許出願을 接受한 後豫備審查에서 이 法律의 要件을 具備한 것으로 認定할 때에는 出願日로부터 18個月을 經過하면 公開한다. 一後略—

第35條

發明의 特許出願日로부터 3年內에 있어서는 特許局은 出願人の 請求에 의하여 그 出願에 對하여 實體審查를 할 수 있다. 一後略—

第43條

特許局은 特許再審查委員會를 設置한다. 出願人은 特許局의 出願拒絕의 決定에 對하여 不服이 있을 때에는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月內에 特許再審查委員會에 再審查를 請求할 수 있다. 一後略—

第49條

特許再審查委員會는 特許無效宣言의 請求에 對하여 審查를 하여 決定을 하고 請求人 및 特許權者에게 通知

한다. —後略—

위와 같이中共의特許法은審查·再審查의主體에對해特許局 또는特許再審查委員會라는表現을쓰고있으나實際로는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審查官 또는再審查委員의合議體가審查·審判業務를處理하는것으로보아도틀림이없을것이다. 그러나위와같은用語의差異가無視되어도좋다고는말할수없을것같다. 왜냐하면우리나라特許廳의審查官 또는審判官은獨立된“機關”이지만自然人이고“職務上獨立하여”業務를遂行하는데对해中共의“特許局” 또는“特許再審查委員會”가職務上獨立하여業務를行한다고하기에는적어도뉴앙스의差異가있다고아니할수없기때문이다(中共의特許再審查委員會의委員長은當然職으로特許局長이된다).

우리나라의特許法이審查官·審判官의資格을法으로嚴格히定하고있는데对해(그實效性은別個問題임),中共이어떠한法規를가지고있는지는알려져있지않다.

中共의特許出願審查는豫備審查(소위方式審查)의實體審查의두가지가있고,實體審查는電氣·機械·化學·物理의4個部門으로나뉘어져행해지고있다고한다.

中共에있어서도審查官의不足이커다란問題가되고있으며,審查基準의統一과經驗의不足을補充하기위하여,그리고審查의質을높이기위하여審查官個人의審查外에3명의審查官이集團討論審查를하는共同審查가行해지고있다고한다(우리나라의擔當局長·課長·審查官의複數審查制와는다름).

또한特許再審查委員會는“經驗이많은技術專門家와法律專門家”들로構成되고委員長은特許局長이兼任하도록되어있다.再審查委員會는當初에해당特許出願을審查했던審查官이提出한意見書를出願인의再審查請求의理由와함께審理하여再審查를행한다.再審查委員會는다시合議體를構成하는再審查官을任命하여해당出願의內容,其他關聯資料를審查하게하며,必要에따라口頭審理를하게할수도있다.再審查官合議體는投票로서多數決原則에따라特許許與與否를決定한다.

위와같이特許出願審查節次 및拒絕査定不服節次는우리나라와比較해큰差異가없으나,여기서問題가될수있는것이“審查基準”이다.

우리나라의경우審查一般基準과產業部門別審查基準이制定되어있고이에依據하여審查가이루어지고있는데,國際特許研修院이後進開發途上國의特許關係

者에대해實施하는研修에中共關係者도參席하였다.新聞報道도있다. 그러나實務的으로는特許法과審查基準의解釋·適用에있어特許廳의審查官과出願人(또는辨理士)간에見解를달리하는事項이적지않다.

特許法施行令第2條第3項의“從屬項은獨立項 또는從屬項을技術적으로限定하고具體화하는데必要한適正한數로記載하여야한다”는規定을둘러싸고—지금은相當히改善되었지만—審查官의解釋이完全히統一되어있지못한實情이다.“A+B+C+D의構成部分으로된寫眞帖”이特許請求範圍의獨立項인경우“A+B+C+D+E의構成部分으로된寫眞帖”이라는從屬項에대하여“E”라는構成部分의“追加”일뿐“限定”이아니므로從屬項으로서認定할수없다고審查된境遇도있다. 그외에도特許請求範圍의記載에있어서,소위and/or라는表現을認定할것인가,特許請求의範圍는發明의詳細한說明에記載된實施例에限定시켜야할것인가등에대하여도論難이있는것이다.

그렇다면中共에대한特許出願의審查에適用될審查基準이우리의關心의對象이아닐수없다.筆者が알기로는中共特許局은審查基準을對外적으로公表하지않고있다.現在試驗의으로運用되고있고언제가는公表될것이라고알려져있을뿐이다.

그러나정작關心의對象은審查基準그自身라기보다는그러한審查基準의解釋·適用에있어中共特許局의審查官사이에서얼마만큼統一化가이루어져있는가하는問題일것이다. 우리나라特許廳의審查에있어서問題가있다고목청을높이는것은內國出願人보다는外國出願人내지그代理人이라는事實과一脈相通하는일이다.

外國에特許出願을하는경우該當國家의公用語로明細書를作成하여야하는데,單純한翻譯만으로는不足하고明細書의體制및特許請求의範圍를그나라의法規에따라알맞게再作成하는것이바람직하다.이러한明細書의再作成은國內辨理士가直接할수도있고現地代理人에게委任할수도있으며,審查過程에서의審查官의要求에따라修正함으로써該當國家의法令에맞추는境遇도있다.

外國出願을위한明細書의再作成은該當國家의特許關係法속에따라야하므로國內辨理士가그나라의審查基準等을알고있으면매우便利하고有益할뿐만아니라審查過程에서拒絕理由가되어어쩔수없이必要한修正을해야함에따라現地代理人에게支給할

費用의 發生을 減少시킬 수 있는 利點이 있기도 하다.

우리 나라의 辨理士에 該當하는 中共의 特許代理人은 辯護士(律士)와도 區分되고 1985年末 現在 5,000餘名 인데 이 중 海外로부터의 特許出願을 代理할 수 있는 資格을 가진 者는 約 400名이라고 하며 1987年度에 最初로 全國統一辨理士試驗이 施行되었다.

中共特許出願을 위한 發明明細書를 英語 또는 日本語로 作成하여 北京에 있는 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專利代理部, 上海에 있는 上海專利代理事務所 또는 香港에 있는 中國專利代理(香港)有限公司에 보내어 中國語明細書를 作成하는 境遇 中共의 審查基準에 맞게 되었는지 單純한 翻譯에 치나지 않아 審查過程에서 問題가 되지 않을지, 翻譯上의 問題와 함께 留意하여야 할 事項이다.

外國人의 特許出願에 대한 特許廳의 審查가 때로는 内國人보다도 느슨하지 않은가 하는 疑懼心을 갖게 될 때도 있는 우리에게는, 美國의 某製藥會社가 우리나라의 特許廳을 相對로 不公正貿易行爲로 美國國際貿易委員會(ITC)에 提訴節次를 開았다는지, 大韓民國政府 및 法院이 外國人の 特許保護에 公正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對應措置를 취하겠다고 美國貿易代表部(USTR)가 으름장을 놓았다든지 하는 新聞報道가 어안이 뚝뚝하게 들리거나와, 共產國이면서도 우리와 類似한 特許制度를 運用하는 中共에 特許出願을 하는 立場에서는, 中共의 特許審查基準을 包含한 關係法侓의 正確한 理解가 切實히 必要하다는 反證이기도 하다.

美國의 政府와 企業은 우리나라 政府와 企業을 업수이여 기고 無理한 要求를 서슴치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우리는 中共에 對하여 正當한 要求를 하기에도 힘이 부칠 것인가 때문이다.

莫大한 經費와 人力을 投資하여 어렵게 開發한 技術이라도 特許權을 附與받지 못하면 獨占的인 權利行使가 不可能하고, 發明 그 自體와는 다른 內容으로 變質된 狀態에서 發明明細書가 作成되어 特許를 받는다면 特許權이라는 開發技術의 保護에 完璧을 기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中共等 外國에 對한 特許出願은 그 나라의 審查·審判의 法律外의 實相과 審查基準중 關係法侓에 대한 읊바른 理解에 터잡아야 하며, 이를 위한 專門家의 立場에서의 研究와 交流가 반드시 必要할 것으로 생각된다.

VI. 맷 는 말

우리 나라가 中共과의 交易을 持續的으로 擴大하여야

한다는는데 대하여 異論을 提起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로서는 우리나라와隣接해 있는 커다란 市場, 그것도 10億以上의 莫大한 人口를 가지고 있어서 潛在力이 큰 中共이라는 市場에 進出함으로써 輸出市場의 多邊化를 기할 수 있고 이러한 對中共交流에 의해 北韓의 挑撥을 抑制하는 效果를 期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中共側으로서는 그들이 追求하는 社會主義近代化計劃에 있어 우리나라의 經濟發展過程을 모델로 하고 싶을 뿐 아니라 그들이 지금 必要로 하는 初步技術 내지 中間技術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製品의 欲이 相對적으로 低廉하므로 外貨不足에 허덕이고 있는 行情에서 우리나라 商品의 輸入은 經濟의 改善과 國民生活의 向上이라는 觀點에서도 魅力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纖維等 輕工業製品에 대한 國際市場에서의 中共의 低價攻勢가 별씨부터 問題가 되고 있듯이 商品의 單純한 輸出入이 아닌 合作工場의 建設이나 技術移轉은 부미행效果에 대한 檢討와 對備策을 念頭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웃 日本에서도 1986年까지는 中共熱風이 휘몰아쳤으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俗談과 마찬가지로 中共의 購買力이 약하다는 것을 알게되어 지금은 상당히 冷靜한 態度로 바뀌었다 한다. 中共의 國民所得이 1,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實情이고 外貨不足에 허덕이고 있으므로 輸入制限政策을 쓰는 것은 오히려 當然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技術移轉에 있어서도 消耗品이나 日用品에 관한 것은 歡迎하지 않으며 政府가 公式的으로는 認定하지 않는 各種 規制가 있는 것도 또한 事實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 複雜한 여건 속에서 拙速은 禁物이라는 警戒의 소리도 있지만 大多數 企業인이 機會만 있으면 中共行 버스를 타려고 애쓰는 것이 오늘의 現實임에 틀림이 없다.

부미행效果를 念慮하지 않을 수 없지만 中共이 必要로 하는 技術을 우리가 充分히 가지고 있는 以上 그러한 技術을 中共에 輸出하여 代價를 받고 中共이 그러한 技術을 習得하는 사이에 우리의 技術을 한段階 높이는 것이 우리의 技術을 死藏시키는 것보다는 得策이라고 생각되나, 우리가 과연 그러한 技術發展을 이루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告白을 하는 企業人도 있다.

또한 中共이 社會主義國家로서 共產黨의 一黨獨裁下에 있고 勞動組合이 會社의 最高議決機關이 되어 있다는 現實은 우리가 豐想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異質的

인 社會에서 想像도 못한 問題에 逢着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覺悟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서로의 經驗을 부지런히 交換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外國貿易을 國家가 獨占하고 있는 狀況에서 特許權을 確保하더라도 輸入制限을 받으면 特許權의 行使는事實上 不可能한 것이다.

그러나 中共과의 經濟 및 技術的 交流가 이제 둘릴 수 없는 大勢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이를前提로 對備策을 세울 수 밖에 없다. 위에서 中共의 特許制度가 갖는 問題點에 대하여 說明하였지만, 이러한 問題點은 우리나라 國民에게만 該當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外國인이 甘受하여야 할 事項이다.

中共에의 特許出願은 中共의 企業이나 個人에 대해 特許權을 行使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外國企業 또는 우리나라의 다른 企業과의 競爭에서 使用할 武器를 마련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境遇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中共國籍이 아닌 企業과 同一한 條件下에서 特許를 出願하고 特許權을 行使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說明한 中共特許制度의 特徵이나 問題點이 中共에 대한 特許出願을 犷躇하게 하는 理由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中共으로서도 特許制度上의 問題點으로 인해 外國으로부터의 技術移轉이 어렵게 된다면, 西方의 特許制度를 採用한 意義가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中共當局으로서도 問題點을 解決하려는 努力을 개울리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언젠가는 여전히 好轉될 것으로 期待하여도 좋을 것이다.

important 것은 特許權이 없는 한 開發技術의 保護가不可能하다는 것이다, 特許權의 行使에 多少間의 어려

〈表〉 外國人의 中共發明特許出願統計

國籍	期間	85. 4. 1 ~	86. 4. 1 ~	87. 1. 1 ~
		86. 3. 31 (12個月)	86. 12. 31 (9個月)	87. 9. 30 (9個月)
美	國	1,575	1,063	884
日	本	1,849	861	769
西	獨	599	300	302
프	蘭	196	152	189
스	斯	213	129	98
英	國	253	163	171
네	三	275	146	143
이	大	101	64	65
스	不	80	63	39
형	聯	64	45	31
캐	大	73	48	50
蘇	聯	10	31	59
홍	共	44	11	24
오	奧	105	69	61
스트	斯	37	21	16
트리	大	30	23	15
리	不	8	10	7
파	聯	55	20	17
랜	大	27	20	26
其	他	103	72	60
合 計		5,697	3,311	3,026

음이豫想되더라도 中共에서의 特許權 確保에 積極的인 姿勢로 임해야 할 것이다. 한 솔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니까.

끝으로 外國人의 中共發明特許出願統計를 위에 表로 提示하였다. (8)

韓國發明特許協會新刊案內

국내 최초 발간!

◎ 中共市場進出을 위한 特許管理 지침서 ◎

中共 工業所有權 制度

冊內附錄：英·中·韓 工業所有權 用語

규격: 국판 296면

편역: 한국발명특허협회

가격: 5,000원